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-164호

「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0월 30일

대전광역시의회 의장

##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### 1. 제안 이유

조례 개정 및 중앙행정기관 또는 대전광역시의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변경시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을 생략하게 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 내용

조례 개정 및 중앙행정기관 또는 대전광역시의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

테크노파크 정관 변경시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을 생략하도록 함(안 제5조제3항).

### 3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(참조 :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)

(전화 042-270-5132, FAX 042-270-5049, E-mail : lms13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### 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##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 보고를 생략한다.

1.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
2. 중앙행정기관 또는 대전광역시의 조직 개편에 따른 정관 변경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정관) ① ~ 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5조(정관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 보고를 생략한다.</u></p> <p><u>1.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</u></p> <p><u>2. 중앙행정기관 또는 대전광역시의 조직 개편에 따른 정관 변경</u>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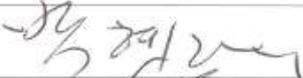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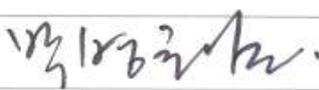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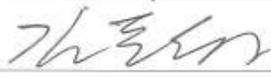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의 원 명 단

연번	의원명	서명	비고
1	심재영		
2	전문익		
3	백혜연		
4	신정삼		
5	박병재		
6	박상숙		
7	정기현		
8	김동식		
9	구비경		
10	김경서		
11	권위력		
12	함인호		
13			
14			
15			
16			
17			